

2026

위험물관리법, 다중이용업소법 **소방승진 소방법령3**

엠북 소방

공부혁명!
mbook.kr

★ **PDF 전자책**
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 종합
- ★ 최근 법령 개정 반영, 고득점 용
- ★ 3시간 9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소방승진 소방법령3

ISBN : 979-11-7393-269-4

발간일 : 2026-06-11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22,000원



소방승진 소방법령 3

[목차]

제1권 위험물관리법(p3)

제2권 다중이용업소법(p107~158)

제1권 위험물관리법

(위험물안전관리법, 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4)

제2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(p12)

제3장 제조소등 위치·구조 및 설비 기준(p25)

제4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(p57)

제5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(p70)

제6장 위험물의 운반 등(p89)

제7장 감독 및 조치명령(p93)

제8장 보칙(p95)

제9장 벌칙(p104)

[약어]

부령은 행정안전부령

고시는 정하여 고시

청장은 소방청장

본부장은 소방본부장

서장은 소방서장

탱크시험은 탱크안전성능시험

탱크검사는 탱크안전성능검사

시험자(탱크시험자)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

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

운반자는 위험물운반자

운송자는 위험물운송자

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

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

대행기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 내용

하늘색은 소방공무원, 소방자격증 시험 기출 문제

붉은색은 소방공무원, 소방자격증 시험 빈출(2~3회 이상) 문제

노란색 형광펜은 중요

하늘색 형광펜은 중요도 상

초록색, 회색 형광펜은 중요도 최상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절 목적 등

1. 목적

- 위험물 저장/취급/운반과 안전관리
- 위험물 인한 위해 방지, 공공 안전

2. 정의

가. 위험물은 인화성, 발화성 등의 성질 가진 대통령령상 물품

나. 지정수량은 위험물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

- 제조소등 설치허가 등의 최저 기준

다. 제조소는 위험물 제조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, 면제(의제) 받은 장소

라.

- **저장소**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,
- **취급소**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
- 하기 위한 시도지사 허가 받은 대통령령상 장소

마. 제조소등은 제조소, 저장소/취급소

바. 도로

- 도로법상 도로
-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
- 사도
-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m 이상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 가능

3. 법 적용제외

- 항공기, 선박, 철도, 궤도
- 차량은 적용

4. 국가의 책무

가) 위험물 사고 예방 시책 수립/시행

- 유통실태/사고유형 분석
- 안전기술 개발
- 전문인력 양성 등

나) 지자체의 시책 추진 행정/재정 지원

5.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/취급

- 시도 조례로 기술상 기준 정함

6. 탱크 용적 산정기준

- 탱크 용량은 탱크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

제2절 위험물 및 지정 수량

- 4류 이외는 함유물 포함, 단위는 킬로그램

1. 제1류 산화성고체(이하 1류)

- 고체나 기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 위험성, 충격 민감성
- 아염소산염류, 염소산염류, 과염소산염류, 무기과산화물은 50
- 브로민산염류, 질산염류, 아이오딘산염류는 300
- 과망가니즈산염류, 다이크로뮴산염류는 1,000
- 과아이오딘산염류
- 과아이오딘산
- 크로뮴, 납, 아이오딘 산화물
- 아질산염류
- 차아염소산염류
-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
- 퍼옥소이황산염류
- 퍼옥소붕산염류

2. 제2류 가연성고체(이하 2류)

-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/인화 위험
- 황화인, 적린, 황은 100
- 철분, 금속분, 마그네슘은 500
- 인화성고체는 1,000
- 부령으로 정하는 것(현재 정하지 않음)

가) 황

-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
- 순도측정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함

나) 철분은 철의 분말

- 53 μ 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 제외

다) 금속분

- 알칼리금속, 알칼리토류금속, 철,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
- 구리분/니켈분과 150 μ 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 제외

라) 마그네슘(함유물)은 다음 제외

- 2mm의 체를 통과 못하는 덩어리
-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

마) 인화성고체

-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 40도 미만

3.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급수성물질(이하 3류)

- 고체나 액체로서 공기 중 발화 또는 물과 접촉해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 발생
- 칼륨, 나트륨, 알킬알루미늄, 알킬리튬은 10
- 황린은 20
- 알칼리금속, 알칼리토금속, 유기금속화합물은 50
- 단, 칼륨, 나트륨, 알킬알루미늄, 알킬리튬 제외
- 금속의 수소화물/인화물, 칼슘, 알루미늄 탄화물은 300
- 염소화규소화합물

4. 제4류 인화성액체(이하 4류): 단위는 리터

- 인화 위험 있는 액체
- 특수인화물은 50
- 제1석유류는 비수용성 200, 수용성 400

- **알코올류**는 400
- **제2석유류**는 비수용성 1,000, 수용성 2,000
- **제3석유류**는 비수용성 2,000, 수용성 4,000
- **제4석유류**는 6,000
- **동식물유류**는 10,000

가) 인화성액체

- 제3석유류,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는 1기압과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
- 다음은 운반용기 사용시 제외
- 화장품, 의약품
- 의약외품,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(단, 알코올류 제외)
- 체외진단용 의료기기

나) 특수인화물

- 이황화탄소,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40도 이하

다) 제1석유류

- 아세톤,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미만

라) 알코올류

- 1분자 구성 탄소원자가 1~3개인 포화1가 알코올, 변성알코올
- 단, 함유량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제외
-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과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과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제외

마) 제2석유류

- 등유,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 21도 이상 70도 미만
- 단, 도료류 등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도 이상이고 연소점이 60도 이상인 것 제외

바) 제3석유류

- 중유,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 70도 이상 200도 미만
- 단,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도료류 등은 제3/제4 석유류에서 제외

사) 제4석유류

- 기어유,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도 이상 250도 미만

아) 동식물유류

- 동물 지육, 식물 종자/과육에서 추출
- 1기압에서 인화점 250도 미만
- 기준에 따라 수납/저장/보관되고 용기 외부에 물품 통칭명, 수량, 화기엄금 표시시 제외

(비고) 고인화점 위험물은 인화점이 100도 이상인 4류

5.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(이하 5류)

- 고체나 액체로서 폭발 위험, 가열분해 격렬
- 지정수량은 1종 10, 2종 100 (24년 7월 개정)
- 유기과산화물, 질산에스터류
- 하이드록실아민, 하이드록실아민염류
- 나이트로화합물, 나이트로소화합물, 아조화합물, 디아조화합물, 하이드라진유도체
- 금속의 아지화합물, 질산구아니딘

- 함유물은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 불활성고체 함유. 단, 다음 제외
가) 과산화벤조일 함유량이 35.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,
황산칼슘2수화물,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 혼합물
- 나) 함유량이 다음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 혼합물
- 비스퍼옥사이드,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 30
- 과산화지크밀, 1·4비스벤젠 40

6. 제6류산화성액체(이하 6류): 300

- 산화력의 잠재적 위험성
- 과염소산
- 과산화수소(농도 36중량퍼센트 이상)
- 질산(비중 1.49 이상)
- 할로젠간화합물

7. 비교

가. 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

- 1) 산화성고체와 가연성고체는
 - 가연성고체 함유물
- 2) 산화성고체와 자기반응성물질은
 - 자기반응성물질 함유물
- 3) 가연성고체,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은
 -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함유물
- 4) 자연발화성물질, 금수성물질 및 인화성액체는
 -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함유물

5) 인화성액체와 자기반응성물질은

- 자기반응성물질 함유물

나. 수량이 복수인 품명

- 속하는 유의 품명 중 위험성이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을 지정수량으로 함
- 위험성 실험/비교 기준은 고시로 정함

다. 실험

- 인정 받은 시험/검사기관, 기술원, 국립소방연구원, 청장 지정 기관에서 실시
- 실험 결과에 품명과 지정수량 포함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

제1절 개요

제5조

가.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

- 저장소 아닌 장소에서 저장, 제조소등 아닌 장소에서 취급 못함

나. 시도 조례 기준에 따라 제조소등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임시

저장/취급

- 서장 승인시(90일내)
- 군부대(군사목적)

다. 위험물 저장/취급, 운반 기준

1) 중요기준

- 화재 등 위해 예방/응급조치에 큰 영향
- 위반시 화재 직접 유발

2) 세부기준

- 예방 등에 중요기준보다 적은 영향
- 위반시 화재 간접 유발
-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, 서류/기구 비치

라. **제조소등의 위치/구조, 설비의 기술기준은 부령**

마. **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/취급시**

-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수의 합이 1 이상이면,
-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봄

제2절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

1. 공통기준

가. 중요기준

- 제조소등에서 허가/신고 관련 품명 외의 위험물, 수량, 지정수량의 배수 초과
- 위험물 저장/취급 금지

나. 세부기준

- 건축물/공작물/설비는 위험물 성질에 따라 차광/환기

- 성질에 맞는 온도, 습도, 압력
- 변질, 이물 혼입 위험성 증대 방지
- 안전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 수리
- 위험물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, 부식, 균열 없는 용기에 수납
- 가연성 액체, 증기, 가스가 새거나 체류, 가연성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시
전선/전기기구 완전 접속, 불꽃 발하는 것 사용 금지
- 보호액에서 위험물 노출 금지

2. 유별 저장/취급의 공통기준(중요기준)

가) 1류

- 가연물과 접촉/혼합, 분해 촉진 물품과 접근, 과열/충격/마찰 피함
- 알칼리금속 과산화물/함유물은 물 접촉 피함

나) 2류

- 산화제와 접촉/혼합, 불티/불꽃/고온체 접근, 과열 피함
- 철분/금속분마그네슘, 함유물은 물/산 접촉 피함
- 인화성 고체는 증기 금지

다) 3류

-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티/불꽃, 고온체와 접근/과열, 공기 접촉 피함
- 금수성물질은 물과 접촉 피함

라) 4류

- 불티/불꽃/고온체와 접근, 과열 피함
- 증기 금지

마) 5류

- 불티/불꽃/고온체와 접근, 과열, 충격, 마찰 피함

바) 6류

- 가연물과 접촉/혼합, 분해 촉진 물품과 접근, 과열 피함

3. 저장 기준

가. 위험물 외 저장 금지(중요기준)

(예외)

1) 옥내/옥외저장소에 다음 위험물과 비위험물 함께 저장시

- 두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, 1m 이상 간격
- (인화성고체와 4류를 제외한) 위험물과 (1류, 2류, 3류, 5류, 6류 함유물을 제외한) 당해 위험물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비위험물
- 인화성고체와 위험물 아닌 고체나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이나 합성수지류(이하 합성수지류등)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비위험물
- 4류와 합성수지류등 또는 4류를 주성분으로 함유한 비위험물
- 유기과산화물/함유물과 유기과산화물 또는 유기과산화물만 함유한 비위험물
- 위험물과 비위험 화약류 또는 비위험 불연성 물품

2) (옥외/옥내/지하/이동) 탱크저장소에 구조/설비에 나쁜 영향없이 다음 비위험물